

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행정기획위원회(기획예산과)

의안번호	제 10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08. 17.)
의 안 명	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변경이유

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세입 감소,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, 지역경제 악화 등 우리구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비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9조
- 2) 설치목적 :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
- 3) 설치연도 : 2020. 12. 31.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

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

-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의 충당
-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2)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기타회계 전출금(일반회계 전출) : 5,100,000천원

다.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규모 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10,334,615	30,400,000	20,065,385

2)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변경 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0,334,615	30,400,000	(증)20,065,385	
기타회계 전입금	10,200,000	30,200,000	(증)20,000,000	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증가
이자수입	134,615	200,000	(증)65,385	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

○ 지출계획변경 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0,334,615	30,400,000	(증)20,065,385	
사무관리비	630	630	-	-
예치금	5,233,985	25,299,370	(증)20,065,385	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및 이자수입 증가
기타회계 전출금	5,100,000	5,100,000	-	-

3)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 원)

조 성 액	-	사 용 액	=	2022년말 조성액(잔액)
30,400,000		5,100,630		25,299,370

3. 참고사항

가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 : 천 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집 행 액			잔 액 (A-B)
	계(A)	전입금	이자수입	계(B)	비용자성 사업비	기타지출	
2022년	10,334,615	10,200,000	134,615	5,100,630	630	5,100,000	5,233,985
계	10,334,615	10,200,000	134,615	5,100,630	630	5,100,000	5,233,985

4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,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기정예산 103억3,461만원보다 34억772만원보다 194% 200억6,538만원이 증액된 304억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.
-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」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7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것임.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(200억 증액) 편성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고자료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

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제7조(설치 및 운용)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20.12.31.]

제8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 [전문개정 2020.12.31.]

제9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4. 통합기금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
2.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[전문개정 2020.12.31.]

제10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0.5.14.)

1.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12.31.)

2.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12.31.)
3. 통합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12.31.)
4. 예수·예탁금의 이자율 및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12.31.)
5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(개정 2020.5.14.)

1.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(개정 2006. 12. 20, 2010.9.10, 2020.5.14.)
2.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(개정 2020.5.14.)
3.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(신설 2020.5.14.)

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담당 주무과장을 간사로 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제11조(통합기금의 관리) ①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한다.

② 통합기금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. [전문개정 2020.12.31.]

제12조(통합기금의 이자율 등) ① 구청장은 국·공채 및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